

의안번호	2210421
의 퇴 인	이만희 의원
회 답 일	2025. 7. 8.
추계번호	25A282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4조의2(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지원)	규제자유특구에서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특구 목적과 직접적 연관을 갖고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복구사업비를 지원함.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84조의2(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안 제84조의2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에서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국가 등이 복구사업비를 지원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안 제84조의2 후단)
- 다만, 향후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재난 발생 여부, 특구 목적과 직접적 연관을 갖고 설치한 시설의 피해 여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등을 추

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1~9차에 걸친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차수	지역
1차 (19년 7월)	○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2차 (19년 11월)	○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3차 (20년 7월)	○ 신규 :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계몽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융합프) ○ 추가 :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4차 (20년 11월)	○ 신규 : 광주(그린에너지 ESS),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5G 차세대 스마트공장) ○ 추가 : 세종(자율주행 실외로봇)
5차 (21년 7월)	○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6차 (21년 11월)	○ 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7차 (22년 9월)	○ 전남(개조전기차), 경북(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경남(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8차 (23년 5월)	○ 신규 : 강원(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전남(친환경 HDPE 소형어선) ○ 추가 : 부산(블록체인), 전북(탄소융복합산업)
9차 (24년 6월)	○ 경북(세포배양식품), 대구(이노-덴탈), 경남(수산부산물 재활용, 수소 모빌리티), 충남(그린 암모니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https://rfz.go.kr/?menu=52>)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